TRADE & ORIGI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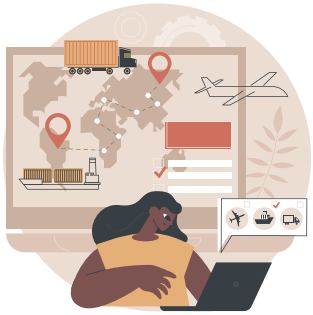

03
ORIGIN ANALYSIS

①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②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③ 수출기업의 FTA 활용 실태와 시사점

④ 섬유산업 FTA 활용률 48% 극복,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로 수출경쟁력 재도약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

2025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제232조 품목별 관세: 자동차·자동차부품[1]	제232조 품목별 관세: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IEEPA 국가별 관세: 마약·이민	IEEPA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기존 적용 관세[2]: 통상법[3] 제301조		기존 적용 관세[2]: 기본관세[4] FTA 등		기존 적용 관세[2]: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한국		25%				25%	품목별 관세	+	25~100% (전기차)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EU·일본		15%				15%							
	중국		25%		20%		45%							
	베트남		25%				25%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① 완성차 조건: 상무부 승인 대상: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USMCA 미충족	25%				25%							
철강·알루미늄	한국·EU·일본·베트남			50%(철) 50%(알)			50%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함량(50%)+펜타닐(2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50%							
		USMCA 미충족												
철강·알루미늄·반가공 구리 파생상품	한국·EU·일본			50%(철) 50%(알) 50%(구)		15%	~50% (중국 펜타닐 20% 추가)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국가별 관세 (비함량 가치)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10% (+24% 유예중)								
	베트남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USMCA 미충족			캐나다 35%									
					멕시코 25%									
그 외 제품	한국·EU·일본					15%	15%	국가별 관세	+	25% or 50%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0%	10% (+24% 유예중)	30%							
	베트남					20%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0%	0%							
		USMCA 미충족			캐나다 35%		캐나다 35% (에너지 10%, 칼륨 10%)							
					멕시코 25%		멕시코 25% (칼륨 10%)							

* 기발표 내용을 기초로 변경된 상호관세율 반영(작성일자: 2025.09.16.)

1) 한국·EU·일본은 15%로 합의(EU·일본 서면 합의문 발표) 현재 한국은 서면화된 발표가 없어 25% 부과중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 부과가 되지 않음.단, 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301조와 AD/CVD는 중복 부과 가능

3)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25%), 광물 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4) EU·일본은 MFN 15%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사례를 통한 관세부과 구조 이해하기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무역확장법」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IE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중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IE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냉장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8.18.)
  ①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② IE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물품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 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캐]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멕]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함량 관세 50% + 비함량 관세 10% + 마약 관세 20%	

◆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냉장고의 對미 수출 체크리스트(예시)〉

No.	항목	체크 내용 예시
1	관세부과 동향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8.18) – 대상 물품의 부과 항목 확인(함량 관세, 비함량 관세)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함량 가치의 50%	함량 가치의 50%	비함량 가치의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냉장고의 품목분류는 HTSUS 8418.10.00
3	원자재 함유량과 제조지 확인	자사 물품의 철강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No.	항목	체크 내용 예시
4	원산지 확인	美 CBP 원산지사전심사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율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 1,000$

구분	관세부과(가격 기준)	
철강 함량	400$ × 50% =	200$
알루미늄 함량	200$ × 50% =	100$
비함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 「FTA-BRIEF」, 제6호를 참조하여 재구성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현황〉[1]

(2025.08.07.)

연번	국가	관세율(%)	
		종전[2]	현행
1	아프가니스탄	10	15
2	알제리	30	30
3	앙골라	32	15
4	방글라데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30	30
7	보츠와나	37	15
8	브라질[3]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6	19
11	카메룬	11	15
12	차드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코트디부아르	21	15
15	콩고민주공화국	11	15
16	에콰도르	10	15
17	적도기니	13	15

1) 본 현황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발표(행정명령 제14236호)에 기반해 전 세계 부과 현황이 작성되었음
2)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서한에 따른 관세율(7.7~7.9)
3) 브라질은 상호관세 10% 외 별도 행정명령 제14323호에 따라 40%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연번	국가	관세율(%)		
		종전[2]	현행	
18	EU	30	MFN 15% 이상 품목 MFN 15% 미만 품목	MFN 적용 15%(MFN 포함)
19	포클랜드 제도	41	10	
20	피지	32	15	
21	가나	10	15	
22	가이아나	38	15	
23	아이슬란드	10	15	
24	인도[4]	26	25	
25	인도네시아	19	19	
26	이라크	30	35	
27	아스라엘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카자흐스탄	25	25	
31	라오스	40	40	
32	레소토	50	15	
33	리비아	30	30	
34	리히텐슈타인	37	15	
35	마다가스카르	47	15	
36	말라위	17	15	
37	말레이시아	24	19	
38	모리셔스	40	15	
39	몰도바	25	25	
40	모잠비크	16	15	
41	미얀마	40	40	
42	나미비아	21	15	
43	나우루	30	15	
44	뉴질랜드	10	15	
45	니카라과	18	18	
46	나이지리아	14	15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 인도는 상호관세 25% 외 별도 행정명령 제14329호에 따라 25%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연번	국가	관세율(%)	
		종전[2]	현행
48	노르웨이	15	15
49	파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51	필리핀	20	19
52	세르비아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9
57	시리아	41	41
58	대만	32	20
59	태국	36	19
60	트리나드 토바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영국	10	10
65	바누아투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잠비아	17	15
69	짐바브웨	1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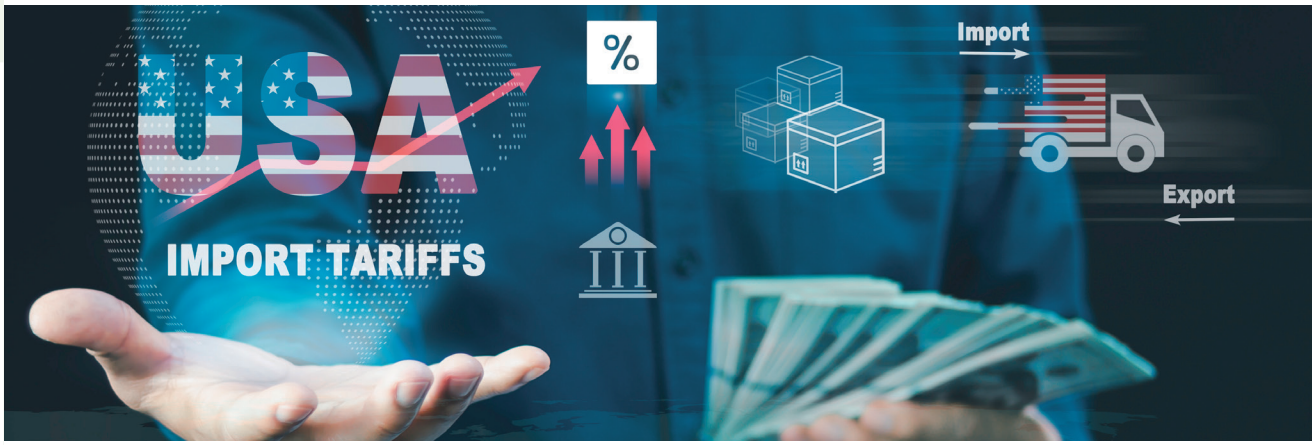

1. '트럼프 관세' 개요

①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②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통상질서 확립

③ 추가 관세 종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적 근거	대상		발표 형태	일자	비고
IEEPA	마약·이민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對캐나다 25%, 에너지 1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칼륨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미충족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對멕시코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칼륨 10%
		중국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對중국 10%
			행정명령 제14228호	03.03	마약(펜타닐) 관세 2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59호(중국) 행정명령 제14266호(중국) 행정명령 제14298호(중국) 행정명령 제14326호 행정명령 제14334호(중국)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對세계 10%, 對중국 34%,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EU 20% 등)
			04.08	對중국 34%→84%	
			04.09	對중국 84%→125%	

법적 근거	대상	발표 형태	일자	비고
		05.12	對중국 125%→10% (+24% 유예)	
		07.31	상호관세율 최종 수정 (對한국 25%→15%)	
		08.11	對중국 관세 유예 기존 10%(+24%) 유지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對세계 25%, (USMCA 충족, 비미국산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포고령 제10896호	02.10	對세계 25%
		06.03	對세계 25%→50%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7호	포고령 제10895호	02.10	對세계 25%
		06.03	對세계 25%→50%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62호	07.30	對세계 50%

④ 최신 조치 주요내용[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08.07)]

▶ 국가별 상호관세 확정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I,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I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MFN) 對EU 관세만 명시(15%, MFN 포함)

▶ 환적(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감경 또는 면제 불가)
-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의심 국가 및 시설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상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전(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홈페이지〉

• 원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하역, 재적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 수행 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예시) 의료용 세트 물품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술 도구와 멕시코산 면 가운과 붕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살균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멸균 및 포장' 공정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⑤ 변동 가능성

• 국가별 개별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

2.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① 자동차·자동차 부품 : 대통령 포고령 제10925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9652_(07.16)

②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 대통령 포고령 제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570_(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08.15)

③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 대통령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④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03.06)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가치에 대한 함량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치에 대한 함량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함량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②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알루미늄은 함량 가치에 따른 중복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③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함량 가치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및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④ 그 외 제품

- (TIP) 보세 임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충족 시 제외, 미충족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충족 에너지 자원(10%), 칼륨(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충족 칼륨(10%) 부과

⑤ 對중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유지(총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른 국가별 10%(+24% 유예 중)+마약·이민 관세 20% 유지

4. '트럼프 관세' 시사점

①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위헌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② 행정명령 제14326호(07.31.)의 제6조

- IE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패소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신설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7월 7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트럼프 2기 행정부〉 美 관세부과 현황 일지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 검토 언급
2월	
1일	• 불법 이민자·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 행정명령 서명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부과 명령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IEEPA 마약·이민 관세 10% 추가 발효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
13일	• 상호관세 부과 예고
26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효(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존 10% + 마약·이민 IEEPA 10%)
5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면제 발표
6일	• USMCA 기준 충족 품목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면제 • USMCA 기준 미충족 캐나다산 에너지 10%, 칼륨 10% 관세부과 • USMCA 기준 미충족 멕시코산 칼륨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효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협의 요청
24일	•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25% 관세부과 발표
26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4월	
1일	• 제232조 근거로 반도체·제조 장비 및 의약품·원료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개시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5일부터) 발표 • 국가별 추가관세(4월 9일부터) '상호관세' 계획 발표, '해방의 날' 명명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 비미국산 부분(Contents)만 25% 적용,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부과
3일	• 제232조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부과
4일	• 제232조 근거로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부과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에 200% 고율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 예고
5일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효
8일	• 중국 보복관세 대응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 84%로 수정, 마약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04%
9일	• 중국, 대미 관세 84%로 인상 •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외 국가 대상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7월 9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수정, 마약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45%
12일	• 스마트폰·컴퓨터·반도체 제조 장비 등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5일	• 제232조 근거로 중요 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29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제도 도입 • 관세상쇄금 등 중복부과 조정

5월	
2일	• 중국·홍콩 소액 면세 기준 폐지
4일	•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부과 방침 발표
9일	• 미·영 무역합의 발표 • 미국: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까지 관세 25%→10%로 인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 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용
10-11일	•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 개최
12일	• 미·중, 상호관세 대폭 인하 합의(90일간 유효) • 대중국 관세: 145% → 30% • 대미국 관세: 125% → 10%
14일	•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포 관세 120% → 54%로 인하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과 예고 • 애플에 최소 25% 관세부과 예고, 아이폰 미국 내 생산 촉구
25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IEEPA) 시행 금지 판결
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3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포고문 서명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효 • 중국 대상 마약·이민 IEEPA 적용
7월	
2일	• 미·베트남 무역합의 발표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6% → 20% 단일관세 • 환적 물품에 40% 고율 관세부과
7일	• 트럼프 대통령 공식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 연기 • 한국·일본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통보
30일	• 반가공 구리제품·구리 파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 브라질 제품에 8월 6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액 면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제품에 8월 1일부터 35% 관세부과 발표 • 상호관세율 수정안 발표(8월 7일 발효) • 중국은 IEEPA에 따른 마약·이민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러시아 석유 제재)
7일	• 한국산 물품 상호관세 15% 발효
11일	•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 활성 의약품 비축량 확보 명령
15일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8월 18일부터 적용) •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비함량 부분은 국가별 관세부과 • 미국에서 제련 및 주조된 경우 0%, 영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 미국-EU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 반도체,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율 15% 이하 보장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조건) EU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 美 연방순회항소법원,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①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 및 마약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님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④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미국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조사 및 관세 관련 설문조사

美 관세수입 현황

2025년 국가별 美 관세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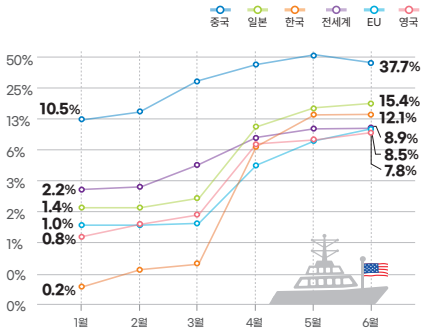

* 월별 관세수입/CIF 기준 월별 수입액

출처: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5년 상품별 美 관세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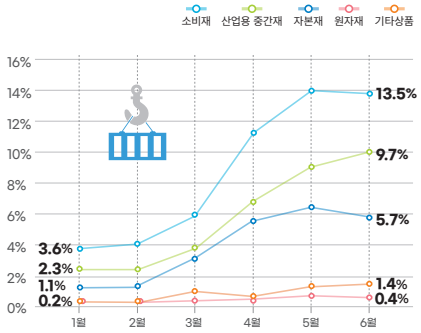

* 월별 관세수입/CIF 기준 월별 수입액

출처: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美 주요 국내 소매업체 상품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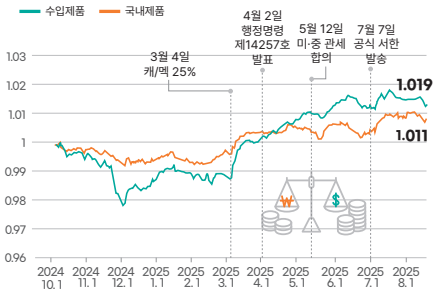

출처: 하버드 프리아상 랩
주: 미국 주요 4개 소매업체 판매 상품의 일일 비가중 가격 지수 (2025년 1월 1일 가격 기준)

美 관세 조치로 인한 중국 수출 변화

중국의 수출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증가했다

2024년 동기 대비 2025년 1월 ~ 6월 수출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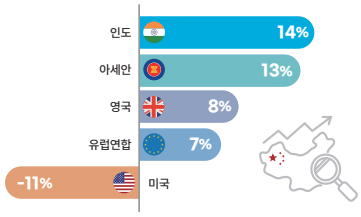

참고: 아세안(ASEAN)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출처: 중국 해관총서

2025년 주요 관세 조치로 인한 美 관세수입 현황 (2025. 09. 07 기준)

(단위:달러)

	제201조 태양광 제품[1]	제301조 중국 물품[2]	제232조 철강[3]	제232조 알루미늄[4]	제232조 자동차[5]	제232조 자동차 부품[6]	제232조 구리[7]	IEEPA (對중국 및 홍콩) 모든 물품[8]	IEEPA (對멕시코) 모든 물품[9]	IEEPA (對캐나다) 모든 물품[10]	IEEPA (상호관세) 모든 물품[11]
2025	4억 2,147만	338억 2,000만	44억 6,000만	26억 2,000만	173억 2,000만	67억 3,000만	3억 4979만	264억 8,000만	55억 3,000만	18억 4,000만	453억 7,000만
2024	2억 9,649만	381억 9,000만	12억 2,000만	3억 8,898만	-	-	-	-	-	-	-
2023	2억 3,705만	383억 7,000만	15억 7,000만	4억 5,969만	-	-	-	-	-	-	-
2022	2억 9,179만	494억 5,000만	26억 1,000만	7억 2,196만	-	-	-	-	-	-	-
2021	8억 9,297만	440억 8,000만	14억 5,000만	4억 3,860만	-	-	-	-	-	-	-

1)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 2)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 3),4)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 5)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 6) 2025년 5월 3일부터 시행
7)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8)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 9,10)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 11)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

출처: CBP 무역통계, https://www.cbp.gov/newsroom/stats/trade

기업 설문 개요

개 요 :

- 2025년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산지의 판단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최근 미국은 세수 확보, 원산지 위반 및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 원산지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수출기업 인식, 원산지조사 및 관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총 605개 기업 응답)

기 간 : 2025년 6월 9일 ~ 6월 27일 (약 3주)

문 항 : 비특혜 원산지 관련 문항, 원산지조사 관련 문항,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관련 문항으로 구성

설문 대상 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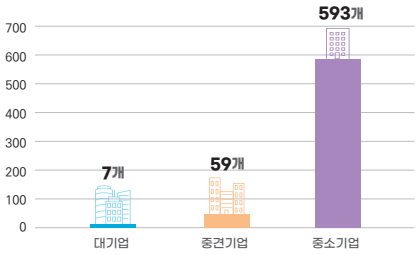

- 총 605개 기업이 설문에 참여
- 설문기업 중 중소기업의 참여율(9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설문 기업 주요 수출 품목 2단위 기준 – 복수 응답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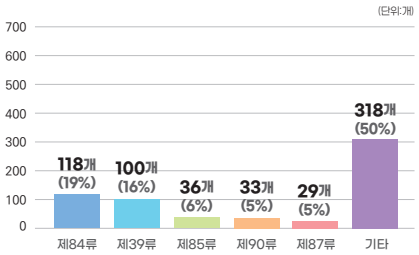

-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제84류의 대미 수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제39류, 제85류, 제90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미국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수출기업 인식

미국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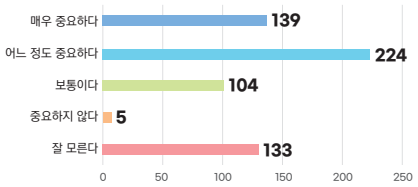

답변	기업 수	비율
매우 중요하다	139	23%
어느 정도 중요하다	224	37%
보통이다	104	17%
중요하지 않다	5	1%
잘 모른다	133	22%
총 합계	**605**	**100%**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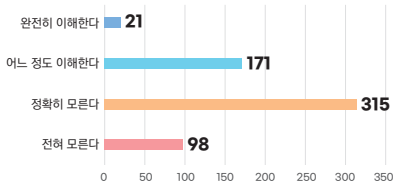

답변	기업 수	비율
완전히 이해한다	21	3%
어느 정도 이해한다	171	2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315	52%
전혀 모른다	98	16%
총 합계	**605**	**100%**

미국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수출기업 인식

원산지기준의 차이로 인한 애로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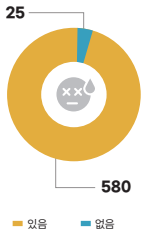

[관련 애로사항]

- 한-중 연결 공정 제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FTA에 따른 특혜 대우를 받았으나, 일반 원산지는 기준이 상이하여 판정에 애로를 겪음
- 미국의 원산지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파악할 수 없음
- 각각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어 실제 수출입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심한 경우 일방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비특혜 원산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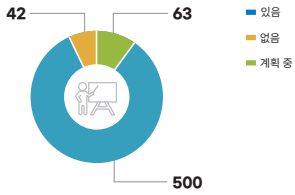

- 비특혜 원산지 관련 외부 교육 또는 컨설팅 경험 여부에 대해 83%의 높은 비율로 해당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원산지 조사

원산지조사 대응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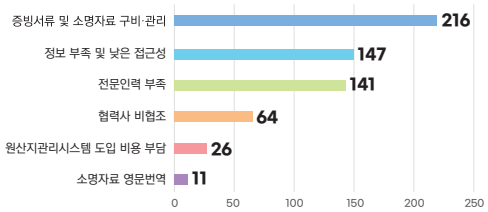

답변	기업 수	비율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구비·관리	216	36%
정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	147	24%
전문인력 부족	141	23%
협력사 비협조	64	11%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26	4%
소명자료 영문번역	11	2%
총 합계	**605**	**100%**

CBP Form 28 혹은 29를 요청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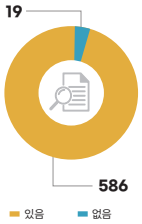

정보제공 요청 사유

답변	기업 수
FTA 특혜원산지결정기준	6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	0
직접운송 여부	1
품목분류 확인	4
과세가격	3
실제 제조공정 수행 여부	6
C/O 진위 여부	7

최근 10년간 요청 받은 건수

연도	건수
2016	13
2017	12
2018	16
2019	15
2020	17
2021	16
2022	14
2023	16
2024	24
2025	42

관세 영향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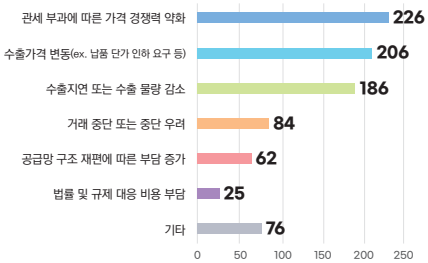

답변	기업 수	비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226	26%
수출가격 변동(ex.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206	24%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물량 감소	186	22%
거래 중단 또는 중단 우려	84	10%
공급망 구조 재편에 따른 부담 증가	62	7%
법률 및 규제 대응 비용 부담	25	3%
기타	76	9%
총 합계	**865**	**100%**

관세 조치로 인한 예상 수출 감소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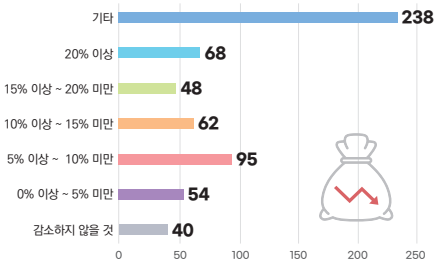

답변	기업 수	비율
감소하지 않을 것	40	7%
0% 이상~5% 미만	54	9%
5% 이상~10% 미만	95	16%
10% 이상~15% 미만	62	10%
15% 이상~20% 미만	48	8%
20% 이상	68	11%
기타	238	39%
총 합계	**605**	**100%**

미국 관세정책 대전환 시대,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식과 관리 역량 진단

권민경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장

1. 들어가며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은 전례 없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관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세 부과가 원산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영 이슈로 부상했다.

본고는 최근 미국의 관세수입 변화 동향과 시장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FTA 활용 수출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황과 향후 대응 과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2. 2025년 미국 관세정책의 근본적 변화

■ 전방위적 관세 부과 체계 도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수입 물품에 대해 크게 국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로 구분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가별 차등적 관세는 2025년 2월부터 마약 및 이민 문제를 사유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4월 5일부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10%)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8월 7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15%, 일본 15%, 베트남 20%, 중국 30%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 반가공 구리제품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세수입의 폭발적 증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에 따르면, 관세 부과 유형별 2025년 관세수입 현황은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관세조치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관세수입은 2024년 381억 7,000만 달러에서 2025년 7월 13일 기준 289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7월까지의 통계임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증가는 확실시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철강제품의 관세수입은 2024년 12억 2,000만 달러에서 2025년 9월 기준 44억 6,000만 달러로 이미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알루미늄의 관세수입 증가폭은 더욱 가파른데, 2024년 4억 3,860만 달러에서 2025년 26억 2,000만 달러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자동차 관련 관세와 IEEPA 기반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들이다. 이들 조치만으로도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미국 관세정책의 공격적 변화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5년 주요 관세 조치로 인한 美 관세수입 현황 (2025. 09. 07 기준)

(단위:달러)

	제201조 태양광 제품[1]	제301조 중국 물품[2]	제232조 철강[3]	제232조 알루미늄[4]	제232조 자동차[5]	제232조 자동차 부품[6]	제232조 구리[7]	IEEPA (對중국 및 홍콩) 모든 물품[8]	IEEPA (對멕시코) 모든 물품[9]	IEEPA (對캐나다) 모든 물품[10]	IEEPA (상호관세) 모든 물품[11]
2025	4억 2,147만	338억 2,000만	44억 6,000만	26억 2,000만	173억 2,000만	67억 3,000만	3억 4979만	264억 8,000만	55억 3,000만	18억 4,000만	453억 7,000만
2024	2억 9,649만	381억 9,000만	12억 2,000만	3억 8,898만	-	-	-	-	-	-	-
2023	2억 3,705만	383억 7,000만	15억 7,000만	4억 5,969만	-	-	-	-	-	-	-
2022	2억 9,179만	494억 5,000만	26억 1,000만	7억 2,196만	-	-	-	-	-	-	-
2021	8억 9,297만	440억 8,000만	14억 5,000만	4억 3,860만	-	-	-	-	-	-	-

1)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 2)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 3),4)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 5)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 6) 2025년 5월 3일부터 시행
7)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8)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 9,10)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 11)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

출처: CBP 무역통계, https://www.cbp.gov/newsroom/stats/trade

■ 관세 부담의 구조적 변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별 관세수입 현황에서 중국산 총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이 6월 기준 37.7%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IEEPA에 근거한 20% 관세율과 상호관세 10%를 합친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 한국산 총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이 6월 기준 12.1%로, 1월 0.2%에서 폭증했다.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왔던 한국이 트럼프 2기 관세 시행 이후 급격한 관세 부담 증가를 겪고 있는 것이다.

상품별로는 소비재의 경우 2025년 1월 수입액 약 890억 달러 중 관세수입이 32억 달러(3.6%)였으나, 7월 기준 총 수입액 약 777억 달러 중 관세수입이 약 116억 달러(15%)로 관세 부담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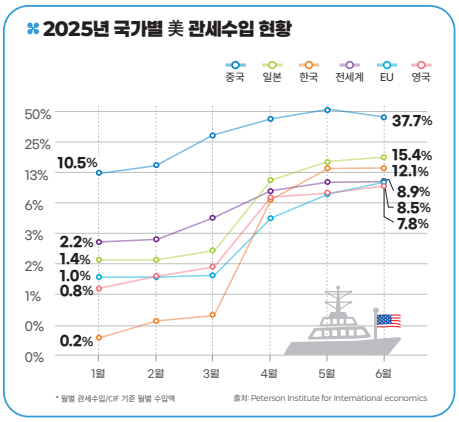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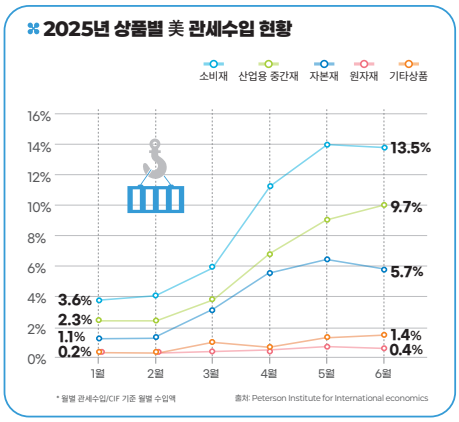

3. 미국 관세정책의 시장 파급효과

■ 미국 내 소매가격 상승압력

하버드 프라이싱 랩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부과는 실제 미국 내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4개 소매업체의 수입제품 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4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 국내제품 가격지수를 역전하여 상승추세를 보였다. 이는 관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관세의 전가효과가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한편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는 중국의 수출 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동기 대비 2025년 1-6월 중국의 수출 증감률을 보면, 대미 수출은 1.1% 감소한 반면, 인도(14%), 아세안(13%), 영국(8%), 유럽연합(7%)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대미 수출 감소에 대응해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 시 고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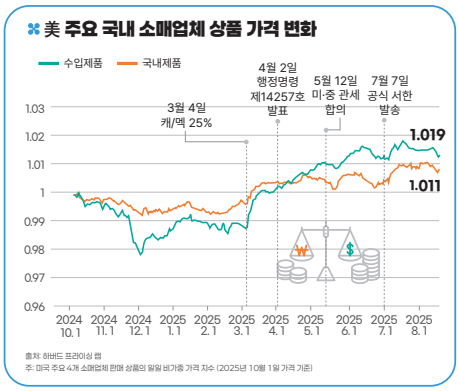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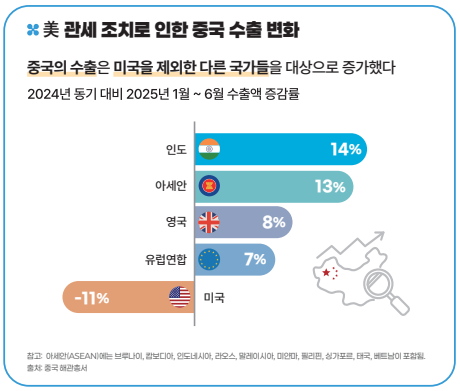

■ 한국 관세청, 미국향 우회수출 적발 급증

한국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4월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우회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 결과 관세청이 2025년 8월까지 적발한 우회수출은 총 20건, 3,569억규모로 전년 동기 8건, 253억 규모 대비 급증하였다. 특히 미국향 우회수출은 작년 동기 3건, 143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15건, 3,494억으로 크게 늘어 전체우회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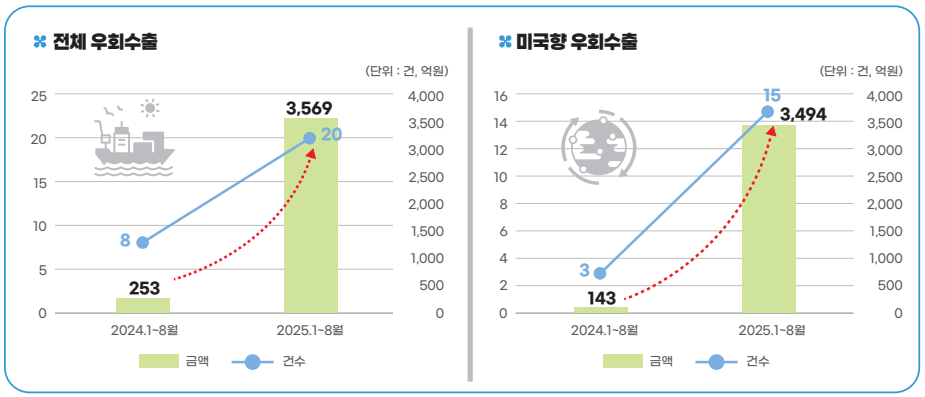

4. 한국 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진단

■ 설문조사 개요

이러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원산지제도 인식 수준과 준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지난 6월 약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FTA 활용 경험이 있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 급변 환경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원산지제도 인식과 원산지조사 경험 및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605개 수출기업이 응답하였고. 응답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제84류(기계류, 19%), 제39류(플라스틱, 16%), 제85류(전기기기, 6%)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기업 68% 특혜·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 몰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0%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22%의 기업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해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특히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52%의 기업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16%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관세 부과나 원산지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응답 기업의 68%가 특혜·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비특혜 원산지 관련 외부 교육이나 컨설팅 경험에 대해서는 83%의 기업이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나 관련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미국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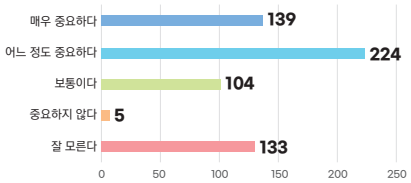

답변	기업 수	비율
매우 중요하다	139	23%
어느 정도 중요하다	224	37%
보통이다	104	17%
중요하지 않다	5	1%
잘 모른다	133	22%
총 합계	**605**	**100%**

※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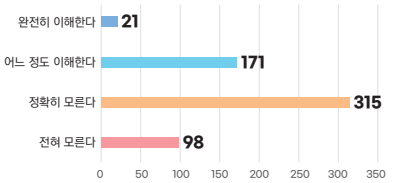

답변	기업 수	비율
완전히 이해한다	21	3%
어느 정도 이해한다	171	2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315	52%
전혀 모른다	98	16%
총 합계	**605**	**100%**

※ 원산지기준의 차이로 인한 애로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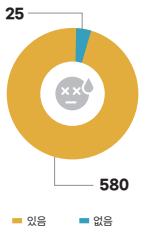

[관련 애로사항]

- 한-중 연결 공정 제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FTA에 따른 특혜 대우를 받았으나, 일반 원산지는 기준이 상이하여 판정에 애로를 겪음
- 미국의 원산지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파악할 수 없음
- 각각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어 실제 수출입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심한 경우 일방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비특혜 원산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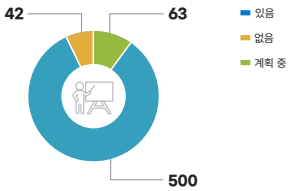

- 비특혜 원산지 관련 외부 교육 또는 컨설팅 경험 여부에 대해 83%의 높은 비율로 해당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원산지조사의 현황과 기업의 대응 실태

설문 응답 기업 중 19개사(3.1%)만이 CBP Form 28 또는 29를 통한 원산지조사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최근 들어 조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23년 까지는 연평균 15건 내외의 조사요청을 받았으나 24년 24건, 25년(6월까지) 42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수입 증가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FTA 원산지 검증과 더불어 비특혜 원산지조사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조사 요청의 주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실제 제조공정의 수행여부에 대한 비중 높은 것으로 보아 기업들은 서류의 정확성과 실질적 제조활동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원산지조사 대응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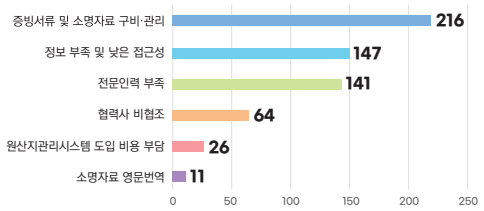

답변	기업 수	비율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구비·관리	216	36%
정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	147	24%
전문인력 부족	141	23%
협력사 비협조	64	11%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26	4%
소명자료 영문번역	11	2%
총 합계	**605**	**100%**

CBP Form 28 혹은 29를 요청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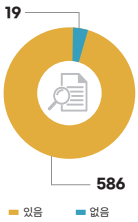

정보제공 요청 사유

답변	기업 수
FTA 특혜원산지결정기준	6
비특혜원산지결정기준	0
직접운송 여부	1
품목분류 확인	4
과세가격	3
실제 제조공정 수행 여부	6
C/O 진위 여부	7

최근 10년간 요청 받은 건수

연도	건수
2016	13
2017	12
2018	16
2019	15
2020	17
2021	16
2022	14
2023	16
2024	24
2025	42

원산지 조사 대응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구비·관리'(36%)였다. 이어서 '정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24%), '전문인력 부족'(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체계적인 원산지 관련 문서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 미국의 관세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는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은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26%)였다. 이어서 '수출가격 변동, 특히 납품 단가 인하 요구'(24%), '수출 지연 또는 수출 물량 감소'(22%)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전망도 심각하다. 39%의 기업이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어려워했지만, 답변한 기업 중에서는 '5% 이상 10% 미만'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이 16%로 가장 많았다. '20% 이상' 대폭 감소를 우려하는 기업도 11%에 달했다. 결국 응답 기업의 54%가 실질적인 수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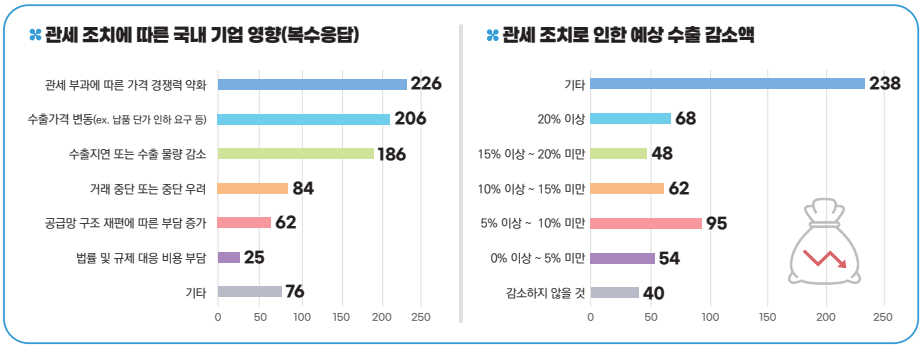

7. 맺음말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단순한 무역정책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준비 수준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의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련 교육 경험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품목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가이드라인 및 원산지 조사 대응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조사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특히 영문 소명자료 작성이나 CBP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지원도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수출 전략 측면에서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고려한 제품 설계와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원료 공급처 다변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3국 생산기지 활용이나 합작투자를 통한 공급망 재편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실무 운영 측면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원산지 결정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매뉴얼로 문서화하고, 모든 원료 및 부품의 원산지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원산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자체 원산지 검증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산지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원산지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변화를 계기로 원산지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급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결국 철저히 대비한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2025년 6월 실시된 '미국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조사 및 관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출기업의 FTA 활용 실태와 시사점

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장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무역의 기반을 위협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한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한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FTA 특혜대상 수출액은 1,1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나, FTA 활용률은 87.0%로 1.3%p 상승하여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TA는 고관세 부과와 예측 불가능한 통상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활용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 현황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2025년 2분기 조사는 총 60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응답 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이 539개사(8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견기업은 59개사(9.8%), 대기업은 7개사(1.2%)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은 기업들이 FTA를 실제 활용하는 목적부터 활용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 애로사항까지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 응답한 수출기업 605개사를 산업군별(MTI 1단위 기준)[1]로 분류한 결과, 화학공업제품(21.6%)과 기계류(20.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섬유류(12.2%), 철강금속제품(11.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물(6.8%), 전자전기제품(6.1%), 생활용품(6.9%), 잡제품(2.1%)이 뒤를 이었다.

또한, 조사 응답 기업의 산업군별 분포는 2024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의 산업군별 분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본 설문조사의 응답이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산업별 구조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품목분류표(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의 약칭으로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관련 HS Code를 연계하여 재구성한 체계를 말하며, 본 고에서는 대분류(MTI 1단위) 기준의 정보를 제공한다.

〈표 1〉 전체 수출기업 산업군별 응답 비중

구분	농림 수산물	화학 공업 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 용품	철강 금속 제품	기계류	전자 전기 제품	잡제품
설문응답 기업 비중	6.8%	21.6%	10.9%	12.2%	6.9%	11.9%	20.8%	6.1%	2.1%
2024년 수출 기업수 비중	8.5%	9.4%	13.6%	12.5%	8.5%	14.3%	23.3%	9.6%	0.3%

자료 : 「기업무역 활동 통계」, 관세청

① 기업이 체감하는 FTA 활용 효과

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얻는 가장 큰 효과로는 관세 절감(50.1%)을 꼽았으며, 이어 수입자 요청(바이어 요구 충족)(41.2%),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27.1%), 가격 경쟁력 향상(22.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Q. FTA 활용을 통해 체감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선택형, 중복 응답 가능)

관세 절감	수입자 요청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효과 미비
50.1%	41.2%	27.1%	22.8%	5.3%	12.1%

산업별로 살펴보면,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57.5%), 화학공업제품(56.1%)과 철강금속제품(50.0%)은 [관세 절감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용품(58.3%)과 섬유류(52.9%), 농림수산물(52.2%) 기업들은 [수입자 요청]의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표 3〉 산업별 :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구분	관세 절감	수입자 요청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효과 미비
농림수산물	39.1%	52.2%	23.9%	30.4%	10.9%	6.5%
화학공업제품	56.1%	36.8%	23.7%	22.8%	5.3%	13.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7.5%	37.0%	28.8%	28.8%	5.5%	13.7%
섬유류	47.1%	52.9%	24.3%	21.4%	4.3%	10.0%

구분	관세 절감	수입자 요청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효과 미비
생활용품	47.2%	58.3%	27.8%	22.2%	0.0%	2.8%
철강금속제품	50.0%	28.0%	30.0%	16.0%	8.0%	16.0%
기계류	49.1%	41.1%	29.4%	21.5%	4.9%	13.5%
전자전기제품	46.9%	32.7%	28.6%	18.4%	2.0%	12.2%
잡제품	33.3%	33.3%	33.3%	66.7%	33.3%	0.0%
전체	50.1%	41.2%	27.1%	22.8%	5.3%	12.1%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MFN 관세율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조사 대상국가 중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미국을 예시로 살펴보면, 미국의 MFN 평균 환산관세율[2)](2025년 6월 기준)은 2.09%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섬유류(13.61%), 생활용품(4.05%),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80%)은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율을 기록하였다. 이들 산업군에서는 수입자가 FTA를 통한 관세 혜택(관세 절감 효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설문에서도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기업들이 [수입자 요청]을 높게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전자전기제품(0.71%)과 철강금속제품(1.40%)처럼 평균보다 낮은 MFN 관세율을 보인 산업군에서는 [수입자 요청]에 의한 FTA 활용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8%)은 평균을 상회하는 MFN 관세율을 보이는 동시에, 설문에서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산업군의 기업들이 FTA를 통해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미국의 산업별 가중 평균 환산 관세율이란 각 품목의 수입액(2025년 6월 기준)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산출한 환산 관세율로 실제 교역에서 산업이 부담하는 평균 관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관세율이 2.09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가격 대비 약 2.09% 수준의 관세가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미국의 산업별 가중 평균 환산 관세율(MFN)

(단위 : %)

구분	농림 수산물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생활 용품	섬유류	철강금속 제품	기계류	전자전기 제품	광산물	잡제품	평균
관세율	3.40	1.01	3.80	4.05	13.61	1.40	2.85	0.71	0.19	0.03	2.09

자료 : USITC
주 : USITC 관세율표(HTS 8단위 기준 MFN 관세)와 2025년 1~6월 미국 수입 금액·수량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환산 관세율을 재산출함(종량세 적용 품목의 경우 종가세로 환산 후, 관세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치임)

아울러 기업들은 서술형 응답을 통해 FTA 활용이 관세 절감 효과에 그치지 않고, 신규 시장을 개척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철강금속제품 '기업은 FTA 활용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신규 거래선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화학공업제품 기업은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해외 수요처와의 접점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업은 '미·중 간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중국 발주가 국내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수출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FTA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FTA 활용은 관세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입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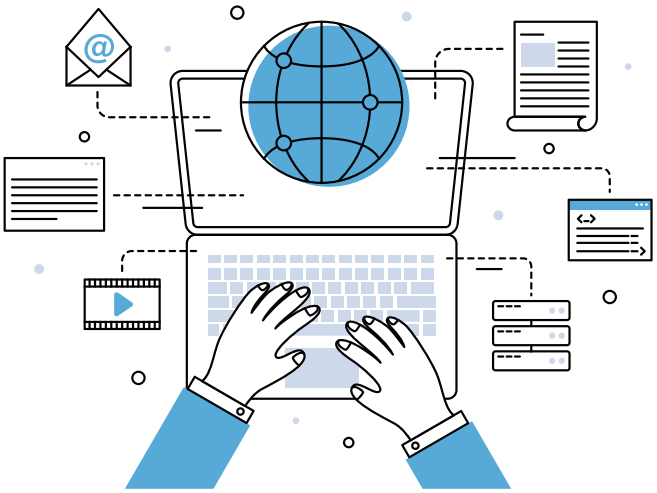

② 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기업들이 FTA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호소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31.2%)이었다. 이어 원산지결정기준(PSR) 적용의 어려움(23.1%),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복잡성(20.5%), FTA 관련 정보 부족(15.4%), 환율 불안정(14.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상 리스크(9.4%), 수출입 시스템 연계 미비·인력 부족(7.4%), 협정문 해석의 모호성(6.4%), 수입국 통관규제 강화(6.1%) 등이 조사되었다.

〈표 5〉 'FTA 애로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선택형, 중복 응답 가능)

- 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 : 31.2%
- PSR(세부 원산지결정기준) 어려움 : 23.1%
- CO 발급 절차 복잡 : 20.5%
- FTA 정보 부족 : 15.4%
- 환율 불안정 : 14.0%
- 통상 리스크(통상 제재·지정학적 리스크) : 9.4%
- 수출입 시스템 연계 미비·인력 부족 : 7.4%
- 협정문 해석 모호 : 6.4%
- 수입국 통관규제 강화 : 6.1%
- 품목분류 해석 불일치 : 4.5%
- FTA 활용 실익 미미 : 3.6%
- 바이어 미요구 : 2.3%
- 실질적 변형 기준 충족 : 1.5%
- FTA 활용조건 불충족 : 1.2%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	FTA 정보 (이해도) 부족	환율 불안정	통상 리스크
31.2%	23.1%	20.5%	15.4%	14.0%	9.4%

주요 애로사항 문항에 대한 산업별 응답을 보면,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은 철강금속제품(42.0%), 섬유류(35.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3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은 잡제품(33.3%), 생활용품(30.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30.1%)에서 높게 나타났다. [FTA 정보 부족]은 잡제품(66.7%), 화학공업제품(28.9%), 농림수산물(26.1%)에서 비중이 컸으며, [통상 리스크]는 전자전기제품(20.4%), 생활용품(19.4%), 화학공업제품(13.2%)에서 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은 생활용품(11.1%), 농림수산물(10.9%), 전자전기제품(10.2%)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6〉 산업별 : 'FTA 애로사항' 주요 조사 결과

구분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	FTA 정보 (이해도) 부족	통상 리스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
농림수산물	21.7%	26.1%	26.1%	10.9%	10.9%
화학공업제품	28.1%	25.4%	28.9%	13.2%	3.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35.6%	30.1%	21.9%	4.1%	6.8%
섬유류	35.7%	18.6%	21.4%	7.1%	10.0%
생활용품	22.2%	30.6%	16.7%	19.4%	11.1%
철강금속제품	42.0%	22.0%	10.0%	12.0%	8.0%
기계류	25.2%	27.6%	25.8%	11.0%	7.4%
전자전기제품	30.6%	18.4%	18.4%	20.4%	10.2%
잡제품	0.0%	33.3%	66.7%	0.0%	0.0%
전체	29.4%	25.3%	23.1%	11.4%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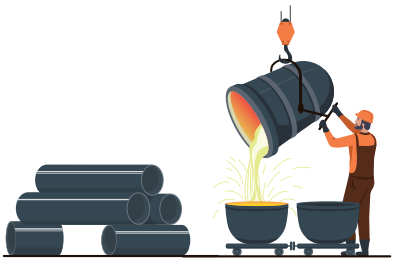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제품 산업군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철강은 원료–중간재–최종재의 단계적 생산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원재료를 대기업이나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자료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관련 증빙자료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섬유산업 역시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섬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과 심사의 집중 대상으로 분류되어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해외 임가공과 보세가공무역이 활발한 섬유산업 특성상 재수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적정성 점검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산업군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과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동시에 호소하였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빙자료를 준비하거나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한–아세안 FTA, RCEP 등 기관발급이 요구되는 협정의 경우 세부 절차가 복잡해 FTA

활용에 애로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농림수산업의 경우 [FTA 정보 부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식품 분야는 수입국별 검역 및 표시기준 등이 수시로 강화되지만 관련 정보가 분산돼 있어 영세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국산 농수산물 검역 부적합 사례는 1,025건에 달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즉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과 더불어 관련 최신 규정을 반영한 증빙서류 준비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서술형 응답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었다. 기업들은 투입원자재의 원산지 확인, 강화된 원산지 검증 요청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도 확인되었다. 일부 기업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추가관세 부과로 향후 수출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기업들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3]에 대해 특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되지만, 일반원산지 판정 기준이 상이하여 원산지 규정 적용이 혼란스럽다"라고 언급하였다.

〈표 7〉 수출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일부 발췌)

공통	• FTA 활용 경험이 적다보니 HS CODE 확인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또한 사내 전담인력도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 산업군)
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	•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따라 원자재 수입국 정보를 요청받았으나, 납품업체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함(기계) • 미국에서의 FTA 검증 요청이 강화되면서, 원산지 증빙자료 등 검증자료 준비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적 비용이 소요됨(기계, 전자전기제품) • 수출 과정에서 부품 중 일부가 제3국산으로 분류되어 최종 제품이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발생, 이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래처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경험함(생활용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어려움 (품목분류 해석의 불일치)	• 당사에서 제작한 자동차 부품이 국내에서는 제8708.50호(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부분품)에 분류되나 미국에서 제8708.99호(그 밖의 차량 부분품)로 분류되어 FTA 활용 시 애로가 발생함(기계)

3) '한·중 연결공정제품'이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공장에서 임가공을 하는 등 제조 가공 공정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된 제품을 말한다. 미국으로 수출시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 판정은 '19 CFR 134'에 따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3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통상 리스크 · 정보부족	• 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향후 FTA 활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우려됨(기계) • 對미 수출품목의 90% 이상이 FTA 활용 대상이나, 자동차부품에 품목별 추가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철강금속제품) •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되나, 일반원산지는 판정 기준이 상이하여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전자전기제품)

특히 [통상 리스크]는 전체 수출기업의 평균 응답(9.4%)보다 對미 수출기업에서 더 높은 비중(14.6%)을 보였다. 다수의 기업이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직접적 요인으로 꼽아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미국 수출기업 : 'FTA 애로사항'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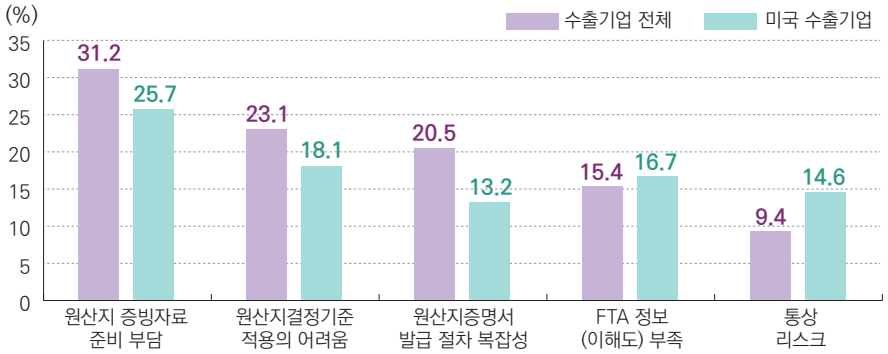

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은 전체 수출기업 평균 응답률(18.0%)에 비해 對미 수출기업에서는 낮은 수준(13.2%)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애로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차적 복잡성 자체는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선택형과 서술형 응답을 종합할 때, 우리 기업이 현시점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애로는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와 원산지 규정 관련 대응, 그리고 통상 리스크 상황에 따른 정보 부족으로 요약된다.

③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기업들은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해 수출품목별(산업별) FTA 활용 가이드 제공(29.4%)과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25.3%)을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FTA 관련 교육(23.1%), FTA 전문가 컨설팅(11.4%),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7.6%) 등이 뒤를 이었다.

〈표 8〉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주요 조사 결과

FTA 활용가이드 제공(발간물 등)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29.4%	25.3%	23.1%	11.4%	7.6%

산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지원 필요성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서술형 응답에서는 주로 對미 수출기업들의 의견이 두드러졌다. 최근 미국의 관세체계 개편 및 통상 규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주요 조사 결과

Q.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선택형)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발간물 등)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기타
농림수산물	21.7%	26.1%	26.1%	10.9%	10.9%	4.3%
화학공업제품	28.1%	25.4%	28.9%	13.2%	3.5%	0.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35.6%	30.1%	21.9%	4.1%	6.8%	1.4%
섬유류	35.7%	18.6%	21.4%	7.1%	10.0%	7.1%
생활용품	22.2%	30.6%	16.7%	19.4%	11.1%	0.0%
철강금속제품	42.0%	22.0%	10.0%	12.0%	8.0%	6.0%
기계류	25.2%	27.6%	25.8%	11.0%	7.4%	3.1%
전자전기제품	30.6%	18.4%	18.4%	20.4%	10.2%	2.0%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발간물 등)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기타
잡제품	0.0%	33.3%	66.7%	0.0%	0.0%	0.0%
전체	29.4%	25.3%	23.1%	11.4%	7.6%	3.1%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FTA 활용 가이드 제공]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FTA 특혜 원산지 판정과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의 불일치, 전기차 배터리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기업들은 제도적 복잡성 속에서 실무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 마련을 요구하였다.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FTA 전문가 컨설팅]과 [FTA 활용 가이드 제공] 수요가 높았다. 철강은 對미 품목별 관세[4] 부과 품목이자 관세 환급[5]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 관련 쟁점은 전문지식과 시의성 있는 정보가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 지원과 구체적 활용 지침의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원산지 증빙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지적하며, 서류 절차의 간소화와 기관 발급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하여 발급 수수료와 행정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FTA 체약상대국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품목별 시의성 있는 FTA 활용 가이드 제공,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큰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한다.

4)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8월 1일부터 반제품 구리와 구리 파생상품 관세가 추가되었다.

5) 美관세환급(refund)방법에는 일반적으로 ①drawback(드로우백)*, ②PSC(Post Summary Correction), ③이의신청(Protest)이 있다.
단,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drawback(드로우백)이 허용되지 않는다.(美 연방관보)
* 특정 조건(수입된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일부 관세 및 세금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

3. 시사점

2025년 2분기 우리 수출기업 FTA 활용 실태조사 결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애로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규제와 시장 환경 속에서 FTA를 통한 관세 절감 효과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FTA가 기업의 안정적 수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임을 보여준다.

다만, FTA가 성숙기에 접어든 현시점에도 원산지 판정 및 관련 규정 해석의 어려움, 시의성 있는 정보 부족, 통상 리스크 등은 여전히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비용 부담과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 지원은 모든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함께, 국가별 규제환경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품목별 관세(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가 부과되는 對미 수출 철강제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와 전문가 컨설팅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이 병행될 때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은 더욱 효과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섬유산업 FTA 활용률 48% 극복,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로 수출경쟁력 재도약

하상우
FTA대구이행지원센터장

시작하며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지원실은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FTA 수입검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등 능동적 행정지원을 통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지난 5년간 원산지인증수출자 섬유제품 약 3,500건의 예비조사 및 정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간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위축되고 있는 섬유산업의 FTA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담아보고자 한다.

1. 섬유산업 FTA 활용 현황

한국 섬유산업은 오랫동안 국가 경제의 중요한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해왔다.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위상이 약화되기도 했으나, 2024년 기준 섬유·의류 산업의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이 핵심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EU, 미국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섬유산업은 타 산업 대비 FTA 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2022년 기준, 전체 산업의 FTA 활용률은 79% 수준인 반면, 섬유산업은 약 48%에 머물렀다. 이는 다른 산업 분야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산업별·연도별 FTA 활용률 분석〉

(단위 : %)

연도	농림 수산물	광산물	화학 공업 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 용품	철강 금속 제품	기계류	전자 전기 제품	잡제품	합계
2020	53.1	71.6	72.7	68.6	52.6	62.3	61.9	86.0	62.4	55.2	73.5
2021	62.3	61.9	86.0	62.4	53.1	71.3	84.7	82.0	78.1	94.8	79.3
2022	62.3	61.9	86.0	62.4	48.2	71.3	84.7	82.0	78.1	94.8	79.3
2023	85.3	82.1	85.9	78.8	56.5	68.2	78.4	87.9	79.3	94	82.9
2024	83.8	84.9	88.4	80.3	57.5	69.2	82.0	89.5	83.2	94.2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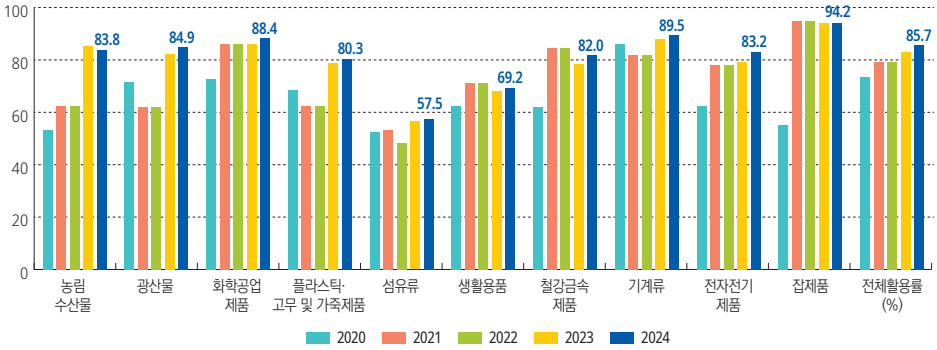

섬유산업 FTA 활용률 저조 원인

섬유산업의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① **산업 구조상의 문제점**

원재료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임가공하는 경우가 많아 완제품 FTA 적용 실익이 적고, EU·미국 등 FTA 체결국에서 요구하는 Yarn-Forward 등 까다로운 원산지규정 때문에 원사 수급부터 완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②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인해 원산지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높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자주 바뀌고 FTA 활용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다.

③ **외부 경쟁 요인**

중국 등 해외 경쟁기업의 저가 공세와 함께, EU 등 주요 시장에서 환경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섬유산업 FTA 활용률 저하 요인 분석〉

구분	원인	주요 내용
산업구조적 문제	임가공 무역구조	베트남·중국 등으로 임가공 수출(원재료 수출 후 현지 가공)이 많아 완제품에 대한 FTA 적용 실익 제한적
	엄격한 원산지 기준	주요 소비국의 'Yarn-Forward' 등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적용 역내산 원사 사용 필수적, 공급망 기획 관리 필요
원산지관리 애로	복잡·다양한 품목관리	다품종 소량생산 다수 개별품목의 원산지 관리 복잡성 및 관리비용 부담
	FTA 정보·인식 부족	중소기업 중심 구조, 잦은 전담자 변경 업무연속성 저해 및 인증수출자 등 FTA 제도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
외부경쟁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 등 저비용 생산국과의 경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국내 원사시장 잠식 등
	비관세장벽	그린딜, 순환경제 등 환경 인증(GOTS, OEKO-TEX, Eco-design) 도입에 따른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

개선 방향과 기회

산업구조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생산 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이고, 원산지 규정 완화는 상대국 이해관계가 상충하므로 다층적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해결될 수 있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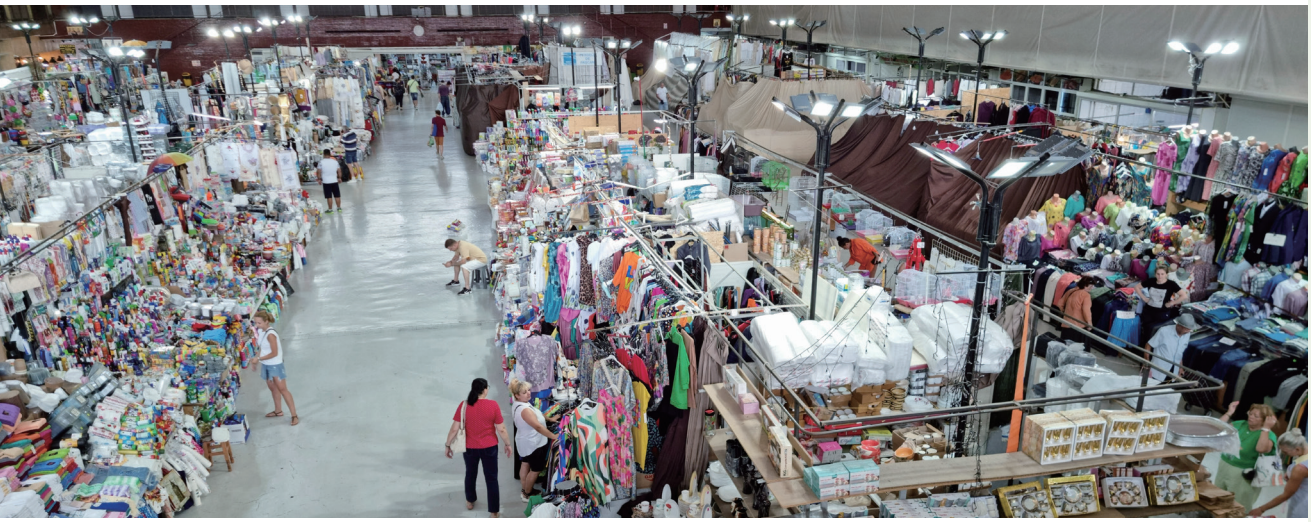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등장한 친환경 무역장벽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약이므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한다면 섬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FTA 인식 및 정보 부족 문제와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은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주로 한-EU FTA에서 활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필수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현재 약 1만 5천 개 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 활용 중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

① FTA 특혜 관세 적용 기회 확대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C/O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간편하고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사후 검증 및 원산지 판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인증수출자는 체계적 원산지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어, 협정상대국 세관에서의 원산지 검증 시 신뢰도가 높아 무역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신청자는 인증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세청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5년간 인증 자격이 부여된다.

〈인증수출자 인증 혜택 정리〉

	인증 前	인증 後
한-EU 한-영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RCEP 한-캄보디아	-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인증 前	인증 後
한-이스라엘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미화 1천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 방식 활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3. 섬유산업 인증수출자 신청: 필수 사항과 준비 전략

섬유산업의 FTA 활용률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을 위해, 인증 신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FTA 활용은 [HS CODE 분류]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 판정]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절차별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HS CODE 분류: 섬유제품 HS 품목분류 유의사항

HS CODE는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FTA 활용의 출발점이다. 섬유제품은 폴리에스터(Poly)와 같은 인조섬유와 면(Cotton) 같은 천연섬유가 혼방된 경우가 많은데, HS CODE는 제품 내 각 섬유가 차지하는 중량비가 높은 쪽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인증신청 시, 각 섬유의 중량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섬유 중량비 증빙은 BOM(자재명세서)에 중량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량비가 기재된 수출신고서 또는 물품설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품목분류 심사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개별품목의 FTA 원산지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섬유 혼방제품 품목분류 기준 및 중량비 증빙자료 예시〉

<제11부 주2>

❖ 혼합직물(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 혼방사의 품목분류

가.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제11부 주 제2호가목)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
-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는 경우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

<호의용어>

5516	2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artificial staple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

[섬유중량에 따른 품목분류 예시]

면(5211)40%, 반합성스테이플 섬유(5516) 30%, 합성스테이플섬유(5514) 30%
※ 제55류의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와 제55류인 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합이 60%로 최대중량을 차지, 같은 제55류 분류 물품의 조성비가 동일함으로 최종호인 제5516호에 분류

• 수출신고필증

㉚모 델 . 규 격 (3)

(01)
RAYON 30'S X DTY100 PLAIN
70% RAYON, 30% POLYESTER
WIDTH 57/58" 128G/SQM
AFTER P/D,S/D WASHING

• 물품설명서

품번	
품명	97%POLYESTER 3%SPANDEX WOVEN FABRIC
HS CODE	5407.69
제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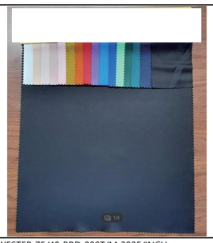
구성	WP:POLYESTER 75/48 BRD 800T/M 280E/INCH WT:POLYESTER 150/48 DTY+SPAN 40 550T/M 114T/INCH
특성	특수 방사 기술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하여 실크와 같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의 폴리에스터 사틴으로 위사 방향의 신축성도 겸비한 직물.
기능/용도	자켓, 치마, 바지 등 여성 의류에 사용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섬유제품 PSR 해석 유의사항

섬유제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한 가공공정기준은, 단순히 세번변경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상품의 주요 생산공정이 협정 당사국 내에서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과 증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① 주요 협정 가공공정기준 유의사항

(한-EU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가공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중 실질변형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원재료에서 완제품으로의 실질적 변형 과정을 중시하며, 단순 조립이나 부속품 부착으로는 원산지 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제60류 편물 원단은 실(Yarn) 단계에서부터 역내산이어야 하는 Yarn-forward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방적(방사) 및 편직, 총 2단계를 거치면 원산지로 인정받게 되며, 이는 원사의 생산부터 편직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실질적 생산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61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편직과 동시에 제품이 완성되는 knit-to-shape 제품, 예를 들어 장갑이나 양말 등은 국내에서 원사 생산과 편성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둘째, 두 조각 이상의 편직물을 봉제하여 완성하는 스웨터와 같은 제품은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국내에서 거쳐야 원산지 기준이 충족된다.

(한-미 FTA) 원사 생산부터 직조, 재단·봉제까지 모든 주요 공정이 협정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Yarn-forward 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0류 편물의 경우에는 섬유 원재료인 원면까지 역내산을 사용해야 하는 Fiber-forward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원사와 원단 제조에 사용되는 탄성사와 의류 제조에 사용되는 보이는 안감(Visible lining)은 협정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EU 및 한-미 FTA 섬유 가공공정기준 주요사항〉

구분	한-미 FTA	한-EU FTA
기본구조	• 세번변경 구조이나 원사제외 규정을 두어 Yarn-forward 원칙 중심	• 특정 가공공정(SP) 구조 중심
주요 가공공정	• 원사 생산부터 편직·직조, 봉제까지 모두 역내 수행	• 방사·제직·편직 등 특정 핵심 공정 국내수행
섬유원료 기준	• 제60류 편물제품은 원면까지 역내산 사용해야 원산지 인정	• 역외 원료를 들여와 최소 2개 이상의 실질변형을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
최소허용기준	• 전체 중량의 7% 이하 비원산지 재료 허용	• 품목별로 비원산지 중량 8~30% 이하 허용
기타	• 탄성사 – 역내산 사용, 최소허용 불가 • 안감 – 역내산 사용, 최소허용 불가	• 탄성사 – 폴리우레탄(스판덱스) 20% 허용 • 안감 – 완제품 PSR 적용, 최소허용 불가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세번변경과 함께 재단·봉제의 국내 수행을 원산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말, 장갑과 같이 재단 과정 없이 실로부터 바로 완제품이 생산되는 품목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는 현행 원산지규정이 실제 산업 기술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문제로 판단된다.

〈섬유제품 가공공정기준 요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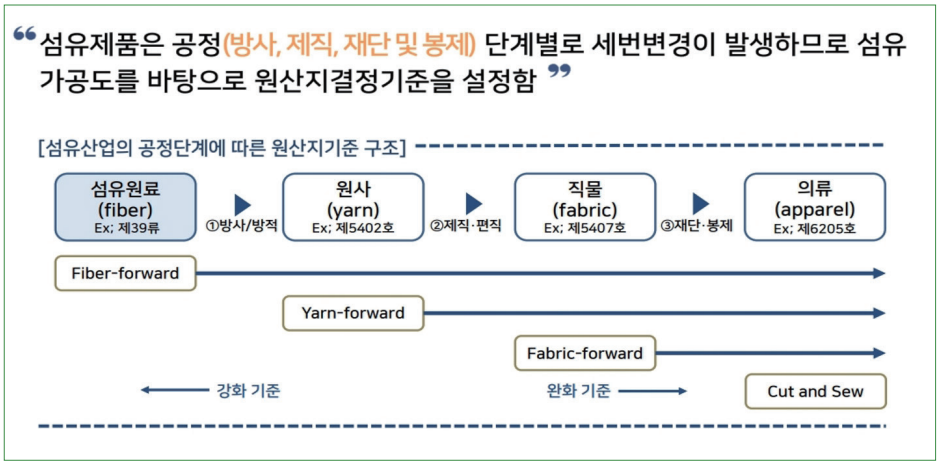

② 가공공정 수행 증빙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으려는 품목이 어느 생산공정부터 국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해당 핵심 공정부터 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수행 증빙에 기초가 될 생산일지, 작업지시서, 재고 및 출입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후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하다.

원산지 판정: 섬유제품 원산지 판정을 위한 주요 제출서류

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청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철저한 서류준비 및 관리가 인증 획득과 사후관리의 핵심이다.

① 기본 필수 서류

인증신청서, 원산지소명서, BOM, 서면확인서 등은 작성방법에 따라 꼼꼼하고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다. 정확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심사의 원활함을 도모해야 한다.

② 섬유제품 가공공정 수행 확인서류

(원산지확인서) 가공공정기준에서 원사 또는 직물이 국내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다. 국내 원사 제조업체가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주요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된 원산지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다. 다만, 원사 가공업체나 유통업체가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증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제조확인서) 생산자가 해당 원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원재료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을 증명해 최종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염색공정의 국내수행 여부 확인에도 활용된다.

〈가공공정 수행 확인서류 예시〉

(제조공정도) 물품의 국내제조 및 수행 공정을 확인하는 서류로, 특히 가공공정 기준이 적용되는 협정에서는 완제품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공정이 국내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는지 명확히 나타내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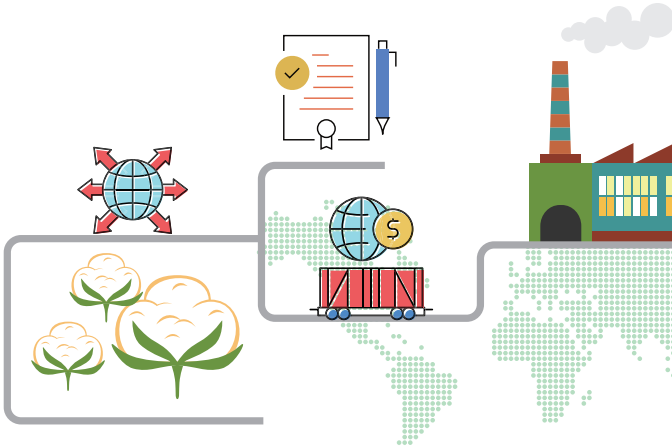

(임가공 계약서) 직조, 염색과 같은 가공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이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계약서에는 가공 대상 원자재와 부자재, 가공 내용, 납기, 가공비용 등의 세부사항이 명시되며, 거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섬유산업 인증수출자 FTA-PASS 활용

섬유제품은 다품종·소량 생산 구조와 엄격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인증수출자 취득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보완 가능하며, 그 핵심 도구가 바로 FTA-PASS라 할 수 있다.

① FTA-PASS 주요 기능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FTA-PASS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 서류 관리를 자동화·디지털화한 시스템으로, 원재료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그리고 원산지 검증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② FTA-PASS 도입 효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무역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인증수출자 제도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업무절차 개선을 넘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한 필수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한국 섬유산업은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복잡한 구조와 까다로운 FTA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FTA-PASS 시스템의 도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중소·중견 섬유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0년부터 YES FTA 전문교육을 무료로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까지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섬유 기업들 역시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와 증빙서류의 철저한 보관,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작성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를 통해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원산지 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은 한국 섬유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